

감사결과처분요구서

No. 2021-					
소관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처	2021	권고	-	-	훈계(2명)

제 목 : 공용차 부적정 운영 감사

1. 현황

○○○○본부(○○○○처)에 배치된 공용차운전원 ○○○은, 2020.4.월부터 2021.5월까지 ○○○○○○○의 출퇴근 운전을 고정적으로 지원하였고, ○○○ ○○○은 본인 공용차량(전용차량) 출퇴근 운전을 장기간 맡겨왔다. 또한 ○○○이 배치된 ○○○○처는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조치나 개선을 하지 않았다.

2. 감사 결과

1) 관계규정 및 법령(판단 기준)

가. 공사 공무직 관리세칙 제4조 제2항(별표4)은 공용차량 운전원의 직무를 ‘소속본부의 임직원 출장 시 운전 등 업무지원’ 및 ‘소속본부 공용차량 유지점검(점검 및 수리, 주유, 세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 출퇴근 지원 불가”가 명시되어 있다.

나.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항(임직원의 기본윤리)에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공·구분)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법부당 내용

○○○은 ○○○○본부 전체의 운전지원 및 차량관리의 직무를 맡은 자로서 ①규정상 금지된 특정 개인의 출퇴근 지원을 장기간 고정적으로 하였다. 그로 인해 ②막상 본인 직무인 일반 직원의 출장업무지원은 충분히 못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복무질서를 문란 시켰다.

○○○은 직원 전체의 출장지원업무를 맡은 ①공용차운전원에게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출퇴근 운전지원을 장기간 고정적으로 맡겨왔으며, ②결과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출장업무에 활용하기 어렵게 하였다. 또한, 임원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공적 직무가 있는 직원에게 출퇴근 운전과 같은 사적 행위를 대신 시켜 ③공·사의 명확한 구분과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였다.

3) 관계자 주장 및 판단

○○○은 “입사 후 첫 대면시 ○○○님 덕이 ○○○ ○○여서 본인 집인 ○○과 가깝고 근무지(○○○)는 멀어서 카풀식으로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이 공용차(전용차)로 출퇴근 할 때에는 자가운전 하여야 하고, 특히 공용차 운전원의 출퇴근 운전 지원을 금지한 공사 공무직 관리세칙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 또한, 공용차 운전원은 ‘소속본부의 임직원 출장 시 운전 등 업무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의 출퇴근을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다른 직원의 출장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등 본인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복무질서를 문란 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요구내용

○○○이 ○○○ ○○○의 출퇴근 때 전용차량 운전을 1년 이상 지원해왔고 ○○○ 또한 공용차량 운전원에게 출퇴근 운전을 맡긴 것은 우리 공사 공무직 관리세칙 제4조 제1항 제2항, 임직원 행동강령 제3조 제3항, 제9조 제1항을 뚜렷이 어긴 행위이다. 따라서, 공사 『직원 훈계 등에 관한 세칙』 제6조(처분사유) 제1항에 따라 ○○○ ○○○과 ○○○ ○○○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무직(운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부는 향후 관련정책 및 경영여건 변화(본사이전 등)를 고려해 전용운전원 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개선책 수립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권고” 처분을 요구합니다.

[관련자]

- ▶ ○○○○본부 ○○○ ○○○ - 훈계.
- ▶ ○○○○본부 ○○○ ○○○ - 훈계
- ▶ ○○○○처 ○○○○부 - 권고